

박형준 / 3월 / 기초GS Plus / 4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득성 평점	응시인원
556703	18.5	10.5	0	0	29	1	0.46%	5	219
554598	16	12	0	0	28	2	0.91%	4	
556327	16	12	0	0	28	2	0.91%	5	
556579	16	11	0	0	27	4	1.83%	5	
556320	16	10	0	0	26	5	2.28%	5	
551074	16	9	0	0	25	6	2.74%	5	
556213	15	10	0	0	25	6	2.74%	4	
557114	14.5	10.5	0	0	25	6	2.74%	5	
556325	15	9.5	0	0	24.5	9	4.11%	4	
556043	14	10	0	0	24	10	4.57%	4	
556321	14.5	9.5	0	0	24	10	4.57%	4	
556616	14.5	9.5	0	0	24	10	4.57%	5	
556905	14.5	9.5	0	0	24	10	4.57%	5	
556312	12.5	11	0	0	23.5	14	6.39%	5	
555905	14.5	9	0	0	23.5	14	6.39%	5	
556214	13	10	0	0	23	16	7.31%	4	
557069	13.5	9.5	0	0	23	16	7.31%	5	
556239	13.5	9	0	0	22.5	18	8.22%	4	
556302	13.5	9	0	0	22.5	18	8.22%	5	
557146	12	10.5	0	0	22.5	18	8.22%	5	
556205	12.5	9.5	0	0	22	21	9.59%	4	
556511	13.5	8.5	0	0	22	21	9.59%	5	
557637	13.5	8.5	0	0	22	21	9.59%	4	
557679	13	9	0	0	22	21	9.59%	5	
555312	12.5	9	0	0	21.5	25	11.42%	4	
556475	13.5	8	0	0	21.5	25	11.42%	5	
556395	12.5	9	0	0	21.5	25	11.42%	5	
557659	13.5	8	0	0	21.5	25	11.42%	5	
554881	13	8	0	0	21	29	13.24%	4	
557035	13.5	7.5	0	0	21	29	13.24%	5	
556920	12	9	0	0	21	29	13.24%	5	
556961	12	9	0	0	21	29	13.24%	5	
556691	11	9.5	0	0	20.5	33	15.07%	4	
556714	11.5	9	0	0	20.5	33	15.07%	5	
557110	12	8.5	0	0	20.5	33	15.07%	5	
556383	13	7	0	0	20	36	16.44%	5	
556532	11.5	8.5	0	0	20	36	16.44%	4	
556958	12.5	7.5	0	0	20	36	16.44%	4	
554903	11	8.5	0	0	19.5	39	17.81%	4	
556282	11.5	8	0	0	19.5	39	17.81%	4	
556408	12.5	7	0	0	19.5	39	17.81%	4	
556260	10	9.5	0	0	19.5	39	17.81%	4	
556401	14.5	5	0	0	19.5	39	17.81%	4	
556272	11.5	7.5	0	0	19	44	20.09%	4	
556337	9.5	9.5	0	0	19	44	20.09%	4	
556489	13	6	0	0	19	44	20.09%	5	
557058	10	9	0	0	19	44	20.09%	5	
555314	11.5	7	0	0	18.5	48	21.92%	4	
556342	13.5	5	0	0	18.5	48	21.92%	4	
556412	10	8.5	0	0	18.5	48	21.92%	4	
556434	11.5	7	0	0	18.5	48	21.92%	4	
556232	10	8.5	0	0	18.5	48	21.92%	5	
556889	10.5	8	0	0	18.5	48	21.92%	5	
556423	11.5	6.5	0	0	18	54	24.66%	4	
556473	15	3	0	0	18	54	24.66%	5	
556626	11.5	6.5	0	0	18	54	24.66%	5	
556564	9	9	0	0	18	54	24.66%	4	
556951	10.5	7.5	0	0	18	54	24.66%	4	
557147	10.5	7.5	0	0	18	54	24.66%	4	
557491	12.5	5.5	0	0	18	54	24.66%	5	
555801	10	7.5	0	0	17.5	61	27.85%	5	
556236	15	2.5	0	0	17.5	61	27.85%	4	

556429	10	7.5	0	0	17.5	61	27.85%	4
556471	9.5	8	0	0	17.5	61	27.85%	4
556881	10.5	7	0	0	17.5	61	27.85%	5
556991	11.5	6	0	0	17.5	61	27.85%	5
556161	17	0	0	0	17	67	30.59%	4
556359	10.5	6.5	0	0	17	67	30.59%	4
556380	11	6	0	0	17	67	30.59%	5
556397	10	7	0	0	17	67	30.59%	4
556432	8	9	0	0	17	67	30.59%	4
557152	10.5	6.5	0	0	17	67	30.59%	4
556545	8.5	8.5	0	0	17	67	30.59%	5
556604	13	4	0	0	17	67	30.59%	5
557592	16	1	0	0	17	67	30.59%	4
557746	11.5	5.5	0	0	17	67	30.59%	4
556878	10.5	6	0	0	16.5	77	35.16%	4
557130	9.5	7	0	0	16.5	77	35.16%	4
554589	9.5	6.5	0	0	16	79	36.07%	4
554633	10	6	0	0	16	79	36.07%	4
555692	10	6	0	0	16	79	36.07%	4
556044	6.5	9.5	0	0	16	79	36.07%	4
556431	9.5	6.5	0	0	16	79	36.07%	4
556448	9.5	6.5	0	0	16	79	36.07%	4
556500	9	7	0	0	16	79	36.07%	5
556747	8.5	7.5	0	0	16	79	36.07%	4
556990	7.5	8.5	0	0	16	79	36.07%	4
557532	9.5	6.5	0	0	16	79	36.07%	5
554631	8	7.5	0	0	15.5	89	40.64%	4
556203	15.5	0	0	0	15.5	89	40.64%	5
556298	8	7.5	0	0	15.5	89	40.64%	4
556344	8	7.5	0	0	15.5	89	40.64%	4
556436	9	6.5	0	0	15.5	89	40.64%	4
556494	7.5	8	0	0	15.5	89	40.64%	4
556539	10.5	5	0	0	15.5	89	40.64%	4
556416	9	6.5	0	0	15.5	89	40.64%	4
556609	9	6.5	0	0	15.5	89	40.64%	4
556833	9.5	6	0	0	15.5	89	40.64%	4
556957	10.5	5	0	0	15.5	89	40.64%	5
557212	8.5	7	0	0	15.5	89	40.64%	4
556769	8.5	7	0	0	15.5	89	40.64%	5
556358	11	4	0	0	15	102	46.58%	5
556399	10.5	4.5	0	0	15	102	46.58%	4
556445	10.5	4.5	0	0	15	102	46.58%	4
557682	9	6	0	0	15	102	46.58%	3
556576	7	8	0	0	15	102	46.58%	4
556774	8	7	0	0	15	102	46.58%	4
557716	11	4	0	0	15	102	46.58%	4
556734	8	7	0	0	15	102	46.58%	4
557623	10	5	0	0	15	102	46.58%	4
556728	12.5	2.5	0	0	15	102	46.58%	4
555732	7	7.5	0	0	14.5	112	51.14%	4
555791	7.5	7	0	0	14.5	112	51.14%	4
556294	9	5.5	0	0	14.5	112	51.14%	4
556329	8	6.5	0	0	14.5	112	51.14%	4
556377	8	6.5	0	0	14.5	112	51.14%	4
556409	10.5	4	0	0	14.5	112	51.14%	5
556482	7.5	7	0	0	14.5	112	51.14%	4
557673	13.5	1	0	0	14.5	112	51.14%	5
556668	8.5	6	0	0	14.5	112	51.14%	5
556824	8	6.5	0	0	14.5	112	51.14%	4
556962	9	5.5	0	0	14.5	112	51.14%	4
556968	7.5	7	0	0	14.5	112	51.14%	4
557049	11.5	3	0	0	14.5	112	51.14%	4
556748	11.5	3	0	0	14.5	112	51.14%	5
556234	8	6	0	0	14	126	57.53%	5
556306	10.5	3.5	0	0	14	126	57.53%	4

557029	10	4	0	0	14	126	57.53%	5
557167	9	5	0	0	14	126	57.53%	4
556776	9	5	0	0	14	126	57.53%	4
556515	6.5	7.5	0	0	14	126	57.53%	5
557156	9.5	4.5	0	0	14	126	57.53%	5
556305	8	5.5	0	0	13.5	133	60.73%	5
556333	9	4.5	0	0	13.5	133	60.73%	4
557070	9.5	4	0	0	13.5	133	60.73%	4
556693	7	6.5	0	0	13.5	133	60.73%	4
554737	11.5	1.5	0	0	13	137	62.56%	4
556926	13	0	0	0	13	137	62.56%	4
556513	13	0	0	0	13	137	62.56%	5
556790	7.5	5.5	0	0	13	137	62.56%	4
556704	6.5	6.5	0	0	13	137	62.56%	4
556939	12	1	0	0	13	137	62.56%	5
556970	13	0	0	0	13	137	62.56%	5
557205	7	6	0	0	13	137	62.56%	4
557662	7.5	5.5	0	0	13	137	62.56%	4
555788	8.5	4	0	0	12.5	146	66.67%	4
555946	7.5	5	0	0	12.5	146	66.67%	4
556324	7.5	5	0	0	12.5	146	66.67%	4
556382	9	3.5	0	0	12.5	146	66.67%	4
555866	12	0	0	0	12	150	68.49%	4
556322	9	3	0	0	12	150	68.49%	5
556414	10	2	0	0	12	150	68.49%	4
556481	6.5	5.5	0	0	12	150	68.49%	4
556392	9.5	2.5	0	0	12	150	68.49%	4
556845	12	0	0	0	12	150	68.49%	4
557533	8	4	0	0	12	150	68.49%	4
555807	11.5	0	0	0	11.5	157	71.69%	4
556368	6	5.5	0	0	11.5	157	71.69%	4
556420	6	5.5	0	0	11.5	157	71.69%	4
556491	10	1.5	0	0	11.5	157	71.69%	4
556588	7.5	4	0	0	11.5	157	71.69%	4
556956	11.5	0	0	0	11.5	157	71.69%	4
556592	11.5	0	0	0	11.5	157	71.69%	5
556983	8.5	3	0	0	11.5	157	71.69%	4
557173	9.5	2	0	0	11.5	157	71.69%	4
557524	5.5	6	0	0	11.5	157	71.69%	4
556151	6.5	4.5	0	0	11	167	76.26%	3
556301	8.5	2.5	0	0	11	167	76.26%	5
556311	6	5	0	0	11	167	76.26%	4
556411	11	0	0	0	11	167	76.26%	4
556536	7.5	3.5	0	0	11	167	76.26%	4
556569	11	0	0	0	11	167	76.26%	4
556985	10.5	0.5	0	0	11	167	76.26%	4
557085	8	3	0	0	11	167	76.26%	4
551072	10.5	0	0	0	10.5	175	79.91%	4
556430	10.5	0	0	0	10.5	175	79.91%	5
557238	4	6.5	0	0	10.5	175	79.91%	4
556869	6.5	4	0	0	10.5	175	79.91%	4
556969	5.5	5	0	0	10.5	175	79.91%	4
557054	10.5	0	0	0	10.5	175	79.91%	4
556360	9.5	0.5	0	0	10	181	82.65%	4
556479	8	2	0	0	10	181	82.65%	4
557062	7.5	2.5	0	0	10	181	82.65%	5
556219	7	2.5	0	0	9.5	184	84.02%	4
556376	6.5	3	0	0	9.5	184	84.02%	4
556910	7.5	2	0	0	9.5	184	84.02%	4
555892	9.5	0	0	0	9.5	184	84.02%	5
556557	5.5	4	0	0	9.5	184	84.02%	4
556458	9	0	0	0	9	189	86.30%	4
556928	9	0	0	0	9	189	86.30%	5
557073	5	4	0	0	9	189	86.30%	4
556741	4.5	4.5	0	0	9	189	86.30%	4

556783	9	0	0	0	9	189	86.30%	4
556154	8.5	0	0	0	8.5	194	88.58%	4
556373	8.5	0	0	0	8.5	194	88.58%	4
556906	4.5	4	0	0	8.5	194	88.58%	4
556938	8.5	0	0	0	8.5	194	88.58%	4
556497	8.5	0	0	0	8.5	194	88.58%	5
554654	4.5	4	0	0	8.5	194	88.58%	5
556883	3.5	5	0	0	8.5	194	88.58%	4
556071	6	2	0	0	8	201	91.78%	4
556189	5.5	2.5	0	0	8	201	91.78%	4
556357	8	0	0	0	8	201	91.78%	4
556777	6	2	0	0	8	201	91.78%	5
557685	8	0	0	0	8	201	91.78%	4
557009	8	0	0	0	8	201	91.78%	4
557141	5.5	2.5	0	0	8	201	91.78%	4
556316	3	4.5	0	0	7.5	208	94.98%	4
556483	6	1.5	0	0	7.5	208	94.98%	4
556499	7.5	0	0	0	7.5	208	94.98%	4
556171	7	0	0	0	7	211	96.35%	4
556388	6	0.5	0	0	6.5	212	96.80%	4
556421	5	1.5	0	0	6.5	212	96.80%	4
556443	6.5	0	0	0	6.5	212	96.80%	5
556341	6	0	0	0	6	215	98.17%	4
556963	6	0	0	0	6	215	98.17%	5
556336	4	1.5	0	0	5.5	217	99.09%	5
554553	4.5	0	0	0	4.5	218	99.54%	3
556559	3	0	0	0	3	219	100.00%	5

<p>박형준/3월/기뿔GS/4회/1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진보성과 관련한 여러 논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p> <p>30점 중 21점을 만점으로 채점하였습니다.</p> <p>단문 문제 2개와 논점이 비교적 명확한 문제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한 편이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배점이 10점으로 다소 큰 편이므로 약 2페이지 정도는 작성해 주셨어야 하나, 아직 암기량이 충분하지 않아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보성 판단방법은 기본적인 단문형 문제이지만, 높은 배점으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p> <p>답지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1에서 설문 2에 해당하는 판례를 작성하고, 설문 2에서 동일한 판례를 중복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시간만 소모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모든 설문을 먼저 읽은 후 각 설문에 작성할 판례를 미리 구상한 다음 답안 작성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p> <p>또한 사안 포섭 시에는 판례의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판례의 키워드를 제시하지 않고 “판례가 실시한 조건에 따르면” 과 같이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p> <p>(3) 설문 3</p> <p>결합발명 논점을 아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합발명의 진보성은 중요한 논점이므로, 이번 기회에 문제의 출제 방식과 이에 대응하는 답안 구성 방식 등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p>	

한편 변경출원, 분할출원 등을 작성한 답안도 많이 있었으나, 이는 해당 문제의 핵심 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점수를 거의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4) 설문 4

상업적 성공 판례는 전반적으로 잘 암기하고 계셔서 답안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를 하나의 목차 아래에 일괄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각 판례별로 목차를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이 답안의 가독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암기할 때에는 판례의 제목까지 함께 암기하여, 답안 작성 시 제목을 먼저 제시한 뒤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소결

소문 4개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 및 분량 관리에 힘써 주셔야 했습니다.

답안을 채점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문제점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설문에 반복하여 작성하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보성의 의의와 취지를 설문 1에서 이미 서술하였음에도 설문 2, 3, 4에서 이를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추가 점수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낭비하게 되므로, 답안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설문을 훑어본 뒤 미리 목차를 구상하여 이러한 실수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p>박형준/3월/기쁨GS/4회/2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신규성과 관련하여 여러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문제-3과 마찬가지로 설문이 4개로 비교적 많은 편이므로, 시간과 분량 관리에 더욱 유의하여 답안을 작성해 주셨어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4개의 신규성 상실사유 각각에 대하여 골고루 작성한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 하였습니다.</p> <p>신규성 조문 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답안이 일부 있었는데, 기본적인 조문 번호는 정확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p> <p>설문에서 신규성 상실사유를 묻고 있고, 배점도 6점으로 크지 않으므로 신규성의 판단방법을 전반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신규성 상실사유에 집중하여 작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p> <p>(2) 설문 2</p> <p>실질적 동일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작성해 주셨으나, 내재적 동일을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양 발명의 구성이 상이한 경우에는 내재적 동일성이 논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p> <p>(3) 설문 3</p> <p>간단한 문제였던 만큼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C가 주지관용기술인 경우를 누락한 답안이 많았는데, 해당 부분도 함께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p>	

(4) 설문 4

‘비밀유지의무 위반’ 판례의 경우, 판례의 결론과 반대로 작성한 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비밀유지의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발명을 공지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신규성이 상실된다는 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결론 자체는 맞더라도 논리 전개가 잘못된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감점하였습니다.

3. 소결

전반적으로 무난한 문제였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누락한 내용은 기본서에 표시해 두고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문을 아예 작성하지 못한 답안이 적지 않게 보였는데, 이제 3월인 만큼 시간 관리 연습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1문을 늦어도 50분 안에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후에는 5분씩 시간을 줄여 가는 방식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번주 GS도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5 [문제-1]

1. 선 1.

1. 진행의 위 취지 - 조 제29조 제2항

기술적 취지, 산업발전을 위해, 용이하지 않게 발명된 것은 아니다.

2. 진행의 진정방법.

- ① 출원발명은 향상된 ② 출원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 학제적인 ③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을 초과하고
- ④ 산업발명은 향상된 ⑤ 출원발명인 산업발명은
- 대비된다.

3. 출원발명 향상 - 취지.

창구발명은 기술은 발명의 심장은 향상된

4. 기술분야 향상 - 취지.

- ① '2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영역으로 출원발명이
- 이용되는 산업분야이며 ②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 문양으로 구현으로 판단해야 한다.

5.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 초과 - 취지

- ①. 종가 등 기록이 나쁜 자료로 파악한 자료,
- ② 쉽게 반명한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6. 선형방식의 원리 - 수직계

(1) 원리

선형방식은 비휘발 물질이 대개 종가 등 기록이 나쁜 자료로 파악한 자료 쉽게 반명한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비휘발

가습분야가 다른 비휘발방식은 특별한 시점이 없이 진행된 부재 위한 선형방식으로 시용이 어렵다.

(2) 내용

선형방식은 진공에 의해 특정 가습나 동남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록 대기 관련해야 한다.

7. 대비 - 수직계

(1) 원리

주선형방식의 대비는 중공-리아일 학인 특정 가습나 이 최저점 극복한 수직 반명한 수 있는지 살펴한다.

(2) 대비 극복 관련방법

① 반명 특정 리제 관련하여 기록 구성의 순간 은 비명 하여 ② 이 때 반명 것 을 특정 관련 특정 고 관련 한다. ③. 뿐만 아니라 선형 방식에 적용 가능 한다.

영역, 통상의 기술자 창작능력, 출원자의 기술성,
이러한 고지사항 고지해야 하며 사후의 고지능을 결정

35

문 2.

1. 기술분야 관련 취제.

(1) 원칙.

제 29조 제 2항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출원분야가 이용되는 산업분야이므로
기술분야란 발명분야는 진행성 부재하는 산업분야
사용하기 어렵다.

(2) 예외.

이공계분야의 구상 특허기술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이 아닌 일부 출원분야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
분야는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이이면
산업분야 사용이 가능.

2. 사안.

(1) 원칙.

신용분야 1과 출원분야 기술분야 다르다면 진행성
부재할 수 있어 무의 취제는 타당하다.

(2) 예외.

신용분야 1의 구상 특정 기술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새로 갖게 출원하여 기술분야에 공헌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성요소
출원받은 진보성 부재할 수 있어, 무의 구성은
부족하다.

III. 실용 3.

1. 진보성 인정 여부

발명 X의 구성 A, B, C 각각 공지(known)로 진보성 인정이
가능하다.

2. 진보성 인정 방법 - 사례

(1) 진보성 인정대상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기술분야에
진보성이 있다.

(2) 진보성 인정방법

특수 구성요소를 분해한 후 개별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과 같은 비교대상 인데 특유 리처처(특징)가 기술분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의 본질을 리처처 분야
하에 이 때 특유 결합된 전체로서 특유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3) 선형성 인정 방법

일시-동시 특유 선형성(선형)이 제시되어 있거나 출원 당시



제반사정이 비록 통상의 가늠이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경험'에 이를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 인정방법으로 권형이 인정될 수 있다.

(4) 상습중리

결과적으로 예측되는 총리 이상의 시정 상습중리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권형이 인정된다.

3. 시정적 근원중리

명시하여 제시된 바 있는 가늠 이상 임의로 권제로 시정적 통상의 가늠이나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4. 시안

(1) 제 1 구간 - 전체

구간 상의 수직된 시정으로 권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고려해볼 수 없다.

(2) 제 2 구간 - 경험적인 근원

생활면에서 경험적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규정은 고려해볼 수 없다.

(3) 제 3 구간 - 유사적 경험 근원

통상의 통상의 권형에 경험적 특정한 시정 상습중리인 것으로 규정이 권형성 인정된다는 규정은 고려해볼 수 없다.

35

III 실문 4.

1. 상표권 등록 - 심판

(1) 침해가능 권리불가

상표권 등록 중 권능 인정되는 수의 자물로
침해는 수 양미안 이기만 시정만으로 권능이 인정되
할 수 없다.

(2) 인치지 고려요소

권능 관련은 우선적인 구식, 무질, 혼란 등
특성의 가동나 용이하게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야 한다.

(3) 분별력 심판

명세서 형태로 가동력 같은 권리 관련 권리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표권 등록만으로 권능
인정할 수 없다.

(4) 가동력 인정요구

한편의 우선적인 상표권 등록이 인정되어야 권능 인정의
공정요인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2. 결론

권능 관련의 가동력요인 무질, 구식, 혼란 고려할 수 있다면
결국은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인치지 요인 평가 위한 이치적
고려요소는 가동력 인치성이 인정되어야 권능 관련 위한 자물



문제-2]

I. 선출 1.

1. 산책의 의미, 취미 - 꽃피고 지는 과정

특정한 종류의 캐미온바, 물리기술리 등인하여 압입 받는다.

2. 산책의 심상사유 - 꽃피고 지는 과정

① 물리 ② 공인사 ③ 반포된 감정의 개리 ④ 관기 등인하여 압입 받는다.

3. 공지 - 취미.

반드시 분류의 리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요하리 안고 분류의 리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해이 농인 것은 의미 받는다.

4. 공인사 - 취미

반정 내용이 비인격적 영향 등 개반이 없는 상해가 수 상도 등의 방법으로 분류의 리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해이 농인 것은 의미 받는다.

5. 반포된 감정의 개리 - 취미

① 반포된 분류의 리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해가 농인 것은 의미 받는다.

② 상당성이란 공개의 수단으로 부여된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의미하며 ③ 제2차의 통상의 가치나 경쟁력이
 없으며 과잉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판단한다.

6. 제1항목의 - 실시예

① 제1항목의 실시예는 제1항목 방식의 경쟁력을 만들고.

② 제1항목의 실시예는 본항목의 경쟁력이 있는 상태를 만들고.

II. 식문 2.

1. 동일한 방법 - 실시예

(1) 동일한 의미

가제상의 관련 항목의 이동은 비교해서 상당한
가치의 신체에 항목이 관련해야 한다

(2) 관련방법

구체의 동일한 어항은 관련하지 않고 한다.

(3) 비교적 동일.

동일한 식자가 동일한 가치가 동일하다.

(4) 상당한 동일.

동일한 구체가 비교가 있어도 관련하지 않고 한다
~~동일~~ 동일한 구체가 비교가 있어도 관련하지 않고 한다



같은 것들의 미분은 0이 아닌 경우, 양 변방은 동일하다.

2. 사인.

(1) 유효

리미트 값으로 $x(A+B+C)$ 와 선형변형 1 ($A+B+C$)는
 극한 C 에 C' 치니로 양 변방은 동일하다 본 수 2의
기각이유는 동일하다.

(2) 예외 1.

C 에 C' 이 불연속 치니로 불리하여 선형변형이 동일하다
 가함지 사인의 선형이 동일하다 본 수 2의 기각이유는
동일하다.

(3) 예외 2.

C 에 C' 치니가 극한치에 도달하는 극한지 후진에서 ~~극한~~
 극한지 도달하여 변형으로 사인은 원래 변형 2는 다름
 치니로 불리한 경우 양 변방은 가함지 사인의 선형이
동일하다 기각이유는 동일하다

2. 실문 3.

1. 선행가속 관련 원칙 - 속/제어.

선행가속 상신하려면, 특허반영의 선행반영은 1개1로
비교해 선행반영이 특허반영의 모든 구성이 비반영이
아니고 특허반영의 구성이 2개 이상 선행반영에 포함
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2. 판단.

(1) 원칙.

선행반영 1과 2이 의해 선행가속 관련 기준은
선행가속 관련 원칙이 반영 된다.

(2) 예외.

선행반영 2가 구체적 구성이므로 새로운 효과 발생 또는
비예외한 것이면 선행가속 관련 원칙의 예외
기준이 된다.

자
2
반영
요요!

피아빙!

I. 서문 (1)

1. 전보성 의의 취지 (법 제29조 제2항)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해, 공제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2. 전보성 판단 방법

- ① 출원발명 해당, ②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해당,
- ③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 파악,
- ④ 선행발명 해당, ⑤ 대비를 한다.

3. 출원발명 해당

(1) 발명규정 (법 제42조 제4항 본문)

처방위에만 발명요건을 사함을 부여한다.

(2) 처방위에 기준 ~~예~~ 위례

처방위는 출원인의 주제발명으로 발명물과 하는 사함을

기재한 것으로, 발명의 효과에 처방위에 기재된 사함이 의한다.

4. 기술분야 해당 위례

① ~~법~~ 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한다.

② 발명을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각 발명별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전제

- ① 출원발명을 극한발명성과 대비하여 급속성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 ② 공장의 기술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출원발명을 통해 발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차이점의 파악방법

공장의 급속성을 파악하여 하며, 급속함 함께 과제한다.

II. 본문(2)

(1)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배경 지식

① ~~본~~ 제2항에서 말하는 '2항성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목적적으로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며, ② 2항을
 공장에 있어서의 목적, 구성, 효과 및 작용에 의해 기술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사안

⊙ 산업발명 (ATBTC) 과 출원발명이 기술분야가 다르다면,
 전항성 판단에 있어 출원발명의 진위성을 보정할 수 없다.

(3) 결론

부의 주장 인정한다.

5

II. 식별(3)

1. 결정방법

2 이상의 자원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한다.

2. 결정방법의 진보성 판단대상 (원칙)

- ① 각 자원이든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며
- ② 각 자원이든 독립하여 진보성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정방법의 진보성 판단방법 (원칙)

- ① 발수의 자원을 각각 분해하여 분해된 개별구성요소가 공지된 것만을 조합하는 양으로, ② ^{특유의} 개체사상으로서에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자원의 조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③ 이에 결합된 전체 구성요소의 발명이 갖는 특유의 효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4. 선행발명인 결정요건 (원칙)

- ① 여러 인용발명을 결합하면 해당발명에 이를 수 있는 양의 동등성이 선행발명에 제시되어 있거나 ② 해당발명의 출원일과 제본시점에 비하여 동등이 개량이 용이하게 과한 경우 결합에 이를 수 있으나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③ 여러 선행발명을 관습을 적용할 수 있다.

5. 선행발명인 위치

공지기술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이라고 과다용량과 과다용량으로 예측되는

사건할 때 있다 ② 이러한 사건의 전바탕이 인정되어 할 수 없다.

(2) 원상회복

가해행위를 범행의 자능, 열의, 흉포로써의 동행행위로서
동시에 범행으로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인정되어안다.

(3) 부수적 행위

특히 범행의 수반행위인 기행위 결과 결과 행위행위를 인정되거
내지않고, 상습적 범행으로 객체자를 인정할 수 없다.

(4) 기속적 인정행위

범행의 수반행위인 범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인정되거
객체자 인정으로 수반행위 인정된다.

2. 결론

가해행위를 범행의 수반행위인 기행위행위를 인정한다.
이런 원상회복은 주 객체, 목적, 전의를 범행행위 위한 아차적
근거만으로 인정 되기 어렵다 범행의 전바탕 인정되거
하더라도 수반이 인정된다.

4-3-5
1. 문제(1)

1. 신의의 이익 행위 (동 제 293 제 1항)

특히 본 행위의 대가인바, 권리 기속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2. 신용상 상한액 (법 제129조 제1항 각호)

① 공리 권리 즉, ① 공리의 권리 ② 공명부내 ③ 반표된 간행물의
기재 ④ 전기통신선로를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한 사항이 해당한다.

(1) 공리 권리

① 반표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의임을 필연적 입자 하거나 ②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2) 공명부내 권리

① 불특정 다수인이 비공개적으로 등의 제정된 입자 하거나
안으로 특히 방법으로 사용되나 ②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3) 반표된 간행물의 기재 권리

① 반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② 간행물

안내, 외래의 기재나, 과학적 방법이나 다른 과학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한다.

③ 기재

특정 기재가 정형성에 의하여 용이하게 기술내역에서 대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되어 될 수 있다.

(4) 전기통신선로를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한 권리

① 전기통신선

전송의 행위의 객체로서는 행한다.

② 권리 이용가능

복수의 권리가 정할 수 있는 상태이다.

3.5

1. 권리 (2)

1. 권리 (2) 표준양형 (권리)

(1) 동일

그 개체상의 표현으로 개체상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기타의 사상의 사지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2) 동일양형

각권이 동일행위 여부만에 의해 판단하되, 그 표시를 차등하여야 한다.

(3) 내재적 동일

양행위의 각권을 구체화한 사실들이 서로 일치치 동일하면
그 기속사상이 동일하다

(4) 형식적 동일

양행위의 구체화가 다르므로 같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별되는 두 행위의 사상을 파악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 시간~~

2. 시간

① X(A+B+C)와 양행위(ABC)는 각권 C와 C'에 차이
가 있다. ~~이때~~ 이때는 각권이 동일하다.

② 만약 C와 C'가 동등한 사상이 될 정도로 구체화한 사실이 동일



해당 양발명은 기보의 사상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기보에 대해 타당하다.

② 양쪽 (A)와 (C)가 미세한 차이가 존재해 사상을 효과발명이 있다면 양 발명은 기보의 사상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기보에 대해 타당하다.

1.5

III. 4문(3)

1. 관행기술 단위의 관행 원리

특허발명이 본문을 통해 관행기술에 대해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인 관행기술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관행기술에 특허발명의 모든 차이가 나타난다. 특허발명의 차이가 관행 기술의 관행기술에 원리적이 나타난다 안된다.

2. 사안

관행기술(4A)과 관행기술(2C)에 대해 관행 (특정관행)을 관행기술 단위의 관행에 의해 타당하다.

2.5

IV. 4문(4)

1. 관행기술을 위한 원리

2. 관행 기술의 관행기술을 관행하다.

2. 양이서 얻기 원하기

간행물이 기재된 발명이해한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이 따라
 통상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있을 필요가 있다.

3. 양행명사건 원하기

간행물을 보면 ~~이~~ 인용발명을 위해서 행명안 사건 기재한
 기재되어있을 뿐 그 형식이나 용어,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아 등록번호와 인용발명을
 그 목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체할 것이 불가능하면.
 등록번호만 간행물에 기재된 것으로는 양행명안 수 없다.

4. 사안

① 이 불공에 ~~이~~ 인용발명 사안을 ~~이~~ 인용발명
 기재된 내용에 광범위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② 따라서 ~~이~~ 통상의 기술자를 ~~이~~ 인용 범위를 쉽게
 실시할 수 있다.

③ ~~이~~ 인용발명의 내용이 상당하다.



이하 여백

파이팅!